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금의 용도에 취수·정수 시설 유지관리 사업 추가〉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15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취수·정수 시설 유지관리 사업 추가	2
※ 참고자료	7
1.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요	7

I. 제안경위

2025년 9월 2일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와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관리지역은 수질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와 토지이용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으며, 취수 및 정수 시설의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경우 수도생산 원가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도요금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상수원관리지역 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수도요금 부담의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Ⅲ. 검토의견

1.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취수·정수 시설 유지관리 사업 추가

개정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상수원관리지역의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사업”을 추가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의 수도시설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0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제22조(기금의 용도)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설></u>	<u>10. 상수원관리지역의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u>
<u>10.</u> (생략)	<u>11.</u> (현행 제10호와 같음)

한강수계관리기금¹⁾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에 따라 한강수계 상류지역

1) 법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19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²⁾에 설치된 기금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운용하고 있음.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법 제19조³⁾에 따라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과금액은 현재 톤당 170원임.

현행법상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오염총량관리, 친환경정수사업 등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⁴⁾되어 있음.

-
- 2) 법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법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 4) 법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
 - 1의2.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 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1의4.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의 운영 지원
 - 1의5.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4.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7.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그런데 상수원관리지역⁵⁾은 수질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와 토지이용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으며⁶⁾, 취수 및 정수시설의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역 등의 경우 수도생산 원가가 높아져⁷⁾,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도요금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사업’을 추가하여 상수원관리지역 내 취수·정수시설의 노후화와 높은 수도생산 원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한강수계 상류지역 주민이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간 수도요금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6)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7) 수도생산원가는 수도 생산에 필요한 비용(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등)을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어,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 등의 경우 생산량이 낮아 수도생산 원가 및 수도요금이 높게 산출되고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법 제1조⁸⁾ 및 제20조⁹⁾에 따라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수질보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음¹⁰⁾.

그런데 수도시설의 유지·관리는 수질개선과는 달리 공급 인프라의 운영·관리 영역에 속하므로, 기금의 본래 목적인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¹¹⁾.

8)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9) **법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19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0)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
- 1의2.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 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1의4.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의 운영 지원
- 1의5.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4.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7.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강수계법은 낙동강수계법, 금강수계법, 영산강·섬진강수계법과 달리 제정 목적에서 “상수원 수질개선”을 명시하고 있어, “물관리 사업”을 기금의 용도에 포함하는 것은 동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둘째,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법」¹²⁾에서 취수, 정수 등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사업은 「수도법」에 따른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547

12)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8.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요¹³⁾

□ 조성 목적

-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계관리위원회에 수계관리기금 설치('99~)

※ (근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수입 현황

- '25년도 총수입은 5,626억원, 물이용부담금이 순수입(여유자금 회수 제외)의 94.3%로 수계기금의 주요 자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백만원)	681,736	639,207	620,357	570,717	562,556
물이용부담금	476,342	473,639	478,841	484,370	476,274
이자수입	1,929	1,189	2,353	4,116	1,401
기타*	35,098	22,501	23,714	21,530	27,186
여유자금 회수	168,367	141,878	115,449	60,701	57,695

* 토지대여료,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잡수입 등

□ 지출 현황

- '25년 사업비 총지출은 4,872억원(주민지원 사업 767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2,473억원 등), 여유자금 운용 754억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백만원)	681,736	639,207	620,357	570,717	562,556
사업비	539,858	523,758	559,656	540,308	487,187
주민지원사업	78,244	84,099	85,257	81,863	76,660
환경기초시설	259,413	257,766	270,173	272,259	247,260
기타수질개선	47,703	52,734	52,197	44,617	34,301
토지매수 등	114,785	91,407	99,787	95,175	90,807
오염총량관리	8,412	8,558	8,580	8,953	8,767
친환경청정	22,202	19,970	34,044	28,273	20,654
기금운영	9,099	9,224	9,618	9,168	8,738
여유자금 운용	141,878	115,449	60,701	30,409	75,369

13)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